

언론조정신청사례

편집자 주

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 
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 
인용할 때는 가주소·가명 등을  
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인 보건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 
러가 취소한 의약품을 처방했다는 보도는  
사실이 아니다 (반론보도)

사건번호 : 2007경남조정25

청 구 명 : 정정청구

신 청 인 : ○○시 보건소 (소장 조 ○ ○)

피신청인 : 경남도민일보

중 재 부 : 경남중재부

접 수 일 : 2007. 10. 24

처리결과 : 합 의

보도내용

경남도민일보 : 『보건소가 가짜약 처방』 제하의 기사  
(2007년 10월 16일자 5면)

내 용 : 경남지역 일부 보건소가 효능실험 조작  
으로 허가가 취소된 복제약품(제네릭)을 처방해온 것  
으로 드러났다.

○○시보건소를 비롯해 □□시·△△시 보건소 등 3곳은  
지난해 9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(이하 생동성 시험)에서  
약효시험 데이터 조작으로 회수·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 
의약품 중 일부를 처방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. (중략)

도내 일부 보건소가 회수·폐기하도록 한 이들 ‘가  
짜 약’을 처방한 횟수는 ○○보건소 3건을 비롯해 □  
□시보건소 2건, △△시보건소 1건 등 모두 6건이었  
다. (후략)

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

본지는 지난 10월 16일자 5면 『보건소가 가짜약 처  
방』 제하의 기사에서 “○○시보건소를 비롯해 □□  
시·△△시보건소 등 3곳은 지난해 9월 생물학적 동  
등성 시험에서 약효시험 데이터 조작으로 회수·폐기  
처분 명령을 받은 의약품 중 일부를 처방한 것으로  
15일 밝혀졌다”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 사실확인 결과, ○○시보건소는 가짜약을 처  
방한 사실이 없이 적법하게 처방한 것으로 밝혀져 이  
를 바로잡습니다.

합의사항

- 제 목 : 반론보도문
- 내 용 : 본지는 지난 10월 16일자 5면에서 <보건소  
가 가짜약 처방>이라는 제목으로 ○○시보건소가 지  
난해 9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서 약효시험 데이터  
조작으로 회수·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의약품 중 일

부를 처방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 이에 대해 ○○시보건소는 허가 취소된 가짜 약을 처방한 사실이 없이 적법하게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•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도민일보 2007년 11월 1일자 5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, 제목활자 크기는 이견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(폐기명령 받은...)과 같은 크기로 하고, 내용활자 크기는 동 기사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.

**합의사항 이행결과**

경남도민일보 : 『반론보도문』 제하의 기사 (2007년 11월 1일자 5면)

내 용 : <합의사항 참조> □

**신청인 경찰서가 타 경찰서 경찰관이 관련된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제식구 봐주기식 조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(반론보도)**

사건번호 : 2007전북조정38

청 구 명 : 정정청구

신 청 인 : ○○경찰서 (서장 이○○)

피신청인 : 새전북신문

중 재 부 : 전북중재부

접 수 일 : 2007. 11. 1.

처리결과 : 합 의

**보도내용**

새전북신문 : 『술값 지불 않은 뺑소니 용의자 알고보니 경찰』 제하의 기사 (2007년 10월 25일자

6면)

내 용 : ○○경찰이 음주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한 의혹을 사고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서만 조사한 뒤 답변이 없어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. (중략)

피해자 나씨는 “흔적도 크게 남지 않아 이것은 뺑소니라고 볼 수도 없다고 조사경찰이 회유했다”며 “피해자 조서를 받은 지 넉달이 다 되어 가도록 답변이 없는 것을 보면 제식구 봐주기식 조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뿌리치기 어렵다”고 말했다. (후략)

**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**

• 제 목 : 『술값 지불 않은 뺑소니 용의자 알고보니 경찰』 관련 정정보도문

• 내 용 : 본지는 지난 10월 25일자 사회 6면 『술값 지불 않은 뺑소니 용의자 알고보니 경찰』 제하의 기사에서 ○○경찰이 음주 후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한 뺑소니 용의자인 경찰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조사경찰관이 “흔적이 크게 남지 않아 뺑소니로 볼 수 없다”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제식구 봐주기식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, 가해용의차량의 소유주는 경찰관이지만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관은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, ○○경찰서 사고조사담당 경찰관이 사건 접수 즉시 양쪽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피해차량 확인 및 가해용의차량 확인,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조사한 바,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부위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없고 가해용의차량에는 전혀 사고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설명했을뿐 보도내용처럼 같은 경찰관을 봐주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회유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.

## 합의사항

- 제 목 : “제 식구 감싸기 사고처리 사실 없다”, ○○경찰서 밝혀
- 내 용 : <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>
-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새전북신문 2007년 11월 8일자 6면 우측 하단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, 제목 「○○경찰서, “제 식구 감싸기 사고처리 사실 없다”」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“○○경찰, 피해자만 조사 후 석달간 답변없어 감싸주기 의혹”과 같게, 본문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.

## 합의사항 이행결과

새전북신문 : 『○○경찰, “제 식구 감싸기 사고처리 사실 없다” 반론보도』 제하의 기사 (2007년 11월 9일자 6면)  
내 용 : <합의사항 참조> □

## 신청인 종단이 스님들의 비리가 담긴 문건을 노조에 전달해 전 총무원장을 퇴임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(정정보도)

사건번호 : 2007충북조정14  
청 구 명 : 정정·손배청구  
신 청 인 : 대한불교 ○○종(총무원장 주 ○ ○)  
피신청인 : 동양일보  
중 재 부 : 충북중재부  
접 수 일 : 2007. 10. 17.  
처리결과 : 합 의 (정정)  
취 하 (손배)

## 보도내용

동양일보 : 『○○사측, □□사 노조 조종 의혹』 제하의 기사 (2007년 8월 8일자 3면)

내 용 : ○○종 총 본산인 ○○사의 현 종단이 지난해 총무원장의 교체 과정에서 부산 □□사 노조를 배후 조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.

부산 □□사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월 ○○사측에 고용안정 보장과 노동조합인정을 요구하는 노조활동을 벌이고 있을때 노조사무실로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전○○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의 비리와 일반 신도들이 노조를 비방하는 문건이 노동조합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서류를 보낸다는 편지와 함께 배달이 됐다는 것이다.

□□사 노조는 이 자료를 토대로 당시 전○○ 총무원장의 퇴임을 요구하고 결국은 2006년 3월 26년간 장기 집권하던 전○○ 총무원장이 □□사 사태와 관련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현 주○○ 스님이 총무원장에 부임했다.

이에 대해 노조 측은 “문제의 서류는 스님들이 개인 비리와 진정서 등으로 보낸 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○○사의 감사나 규정부에 보관해야할 극비 문서임에도 어떻게 이 서류가 노조한테 보내져왔는지가 뻔한 사실 아니냐”며 “발신지를 확인해 보니 현 주○○ 총무원장이 주지로 있던 대구 △△사가 있는 곳에서 발송됐으며 보낸 사람은 ●●(이○○)으로 돼 있었다”고 밝혔다.

이후 전○○ 전 총무원장이 물러나고 현 주○○ 총무원장이 부임한 이후 현 종단의 한 스님이 “종단에서 할 수 없는 일을 □□사 노조들이 그동안 큰일했다”며 격려까지 했다고 □□사 노조 측은 주장했다. (후략)

##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

•제 목 : ○○사측, □□사 노조 조종 의혹 사실과 달라  
 •내 용 : 본지는 지난 8월 8일자 3면 『○○사측, □□사 노조 조종의혹』 제하의 기사에서 ○○종 총본산인 ○○사의 현 종단이 지난해 총무원장 교체과정에서 □□사 노조에 전 총무원장이던 전○○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의 비리가 담긴 문건을 보내어 노조를 조종하여 전○○ 총무원장을 퇴임시킨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.

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, ○○종 총본산인 ○○사의 현 종단은 위 문건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고, ○○종 총본산인 ○○사의 현 종단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

**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**

100,000,000원

**합의사항**

•제 목 : 정정 및 반론보도문  
 •내 용 : 본 신문은 지난 8월 8일자 사회면에 『○○사측, □□사 노조 조종의혹 - 지난해 ○○종 총무원장 교체과정』이라는 제목으로 ○○종 총본산인 ○○사의 현 종단이 지난해 총무원장 교체과정에서 □□사 노조에 전 총무원장이던 전○○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의 비리가 담긴 문건을 보내어 노조를 조종하여 전○○ 총무원장을 퇴임시킨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.

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, ○○종 총무원장의 교체는 ○○종 중정이 결정하는 사안으로 □□사 노조의 탄핵이 작용한 것이 아니며, 전○○ 전 총무원장이 26년간 장기 재직하고 연로하여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.

또한, ○○종 총본산인 ○○사의 현 종단이 □□사 노

조에 전 총무원장이던 전○○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의 비리가 담긴 문건을 보내어 노조를 조종한 의혹에 대해, 현 종단에서는 노조 측에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, ○○사의 현 종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
본보는 해당기사 내용 중 사실 확인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 ○○종 총본산인 ○○사의 현 종단에 깊이 사과드립니다.

•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동양일보 2면에 보도하되,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하여 2007년 10월 26일(토요일, 공휴일 제외)까지 게재한다.

•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, 조정대상기사와 ○○종 관련 2007년 3월 11일자 및 2007년 3월 19일자 기사를 삭제한다.

•피신청인 기자는 ○○종 총본산인 ○○사 현 종단에 의전을 갖추어 공식 사과한다. 이행이 지체될 경우, 2007년 11월 11일부터 그 이행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.

•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, 제3항, 제4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며,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·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, 2007가합3923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소송을 취하한다.

•피신청인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(조정대상기사 및 2007년 3월 11일자 및 2007년 3월 19일자 기사 포함)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으로 ○○사와 관련하여 기사를 게재하지 아니한다.

**합의사항 이행결과**

동양일보 : 『정정 및 반론보도문』 제하의 기사 (2007년 10월 25일자 44면)

내 용 : <합의사항 참조> □